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
		총페이지	1 / 12

윤 리 규 정

주 식 회 사 케이프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윤 리 규 정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심의번호	심의,사규-
			총페이지	2 / 12

개 정 이 력 서

규정명	윤 리 규 정		문서번호	
개정NO	개정일자	제·개정 내용	기 안 자	기 안 부 서
	2021.12.31	개 정	권 상 철	관 리 팀
1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 ① 윤리 강령 신설 ② 제1조 적용 범위 신설 ③ 제2조 방침 신설 ④ 제3조 윤리규정 주체 및 역할 신설 ⑤ 제4조 윤리규정 세부 실천 시스템 신설 ⑥ 제22조 제보자 보호 신설 ⑦ 제28조 윤리규정의 준수 책임 신설 ⑧ 부칙 제2호 해석기준 신설 ⑨ 부칙 제3호 타규정과의 관계 신설 ⑩ 별지서식 제1호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추가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
		총페이지	3 / 12

윤 리 강 령

주식회사 케이프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1.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관습을 준수한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한다.
3. 윤리경영을 기업문화화하고, 협력사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윤리경영을 위한 담당조직을 두어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
5. 본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
		총페이지	4 / 12

조 항	내 용	개정일자
제1조	적용 범위	2021.12.31
제2조	방침	2021.12.31
제3조	윤리규정 주체 및 역할	2021.12.31
제4조	윤리규정 세부 실천 시스템	2021.12.31
제5조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제6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제7조	고객의 권익보호	
제8조	법규의 준수	
제9조	건전한 기업활동	
제10조	사회적 책임	
제11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제12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13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제14조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제15조	공동번영	
제16조	금품, 접대 등의 수수금지	
제17조	기타 불공정 행위의 금지	
제18조	일에 대한 정열	
제19조	회사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 수행	
제20조	술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통한 올바른 행동	
제21조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개발	
제22조	제보자 보호	2021.12.31
제23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제24조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제25조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	
제26조	회계처리의 투명성 유지	
제27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28조	윤리규정의 준수 책임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2조	해석 기준	2021.12.31
부칙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2021.12.31
별지서식 제 1호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2021.12.31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
		총페이지	5 /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프(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방침)

회사는 고객, 구성원, 주주, 거래처,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제 3 조 (윤리규정 주체 및 역할)

1. 윤리규정 담당 책임자

윤리규정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규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2. 윤리규정 담당조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3. 윤리규정 실행 책임자

각 조직의 임원, 팀장 등 직책자는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윤리규정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조직 구성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제 4 조 (윤리규정 세부 실천시스템)

본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규정 세부 실천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1. 윤리규정 실천지침

구성원이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

2. 윤리규정 준수서약

구성원은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매년 1 회 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 후 서명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6 / 12

3. 비윤리 예방시스템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이슈 도출 및 예방·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 1) 윤리교육 : 구성원은 윤리의식 고취 및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윤리설문 : 구성원의 윤리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자정시스템 : 현업의 자율적인 Risk 점검 및 해결 과정을 통해 선제적인 Risk Management를 수행한다.
- 4) 내부감사 :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이 있으며, 감사방침, 적용범위, 운영방법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윤리상담·제보채널

- 1)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 2) 경영성과에 기여한 실명 상담·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

제 2 장 고객 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1.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2. 모든 제품은 품질 제일주의를 근간으로 최적의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유통 절차를 거쳐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제 6 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 7 조 (고객의 권익보호)

1.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7 / 12

제 3 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제 8 조 (법규의 준수)

1. 사회 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3. 국제기준 및 국가별 법규를 고려하여 임직원의 고용 및 임금조건을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결정한다.

제 9 조 (건전한 기업활동)

1.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2.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며,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4. 고객사나 협력사에 대해 경쟁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권하지 아니한다.
5.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6. 외부 거래선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의 수수 및 지분을 제공받거나 직위와 직무를 이용하여 폐해를 끼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에 손해가 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 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3.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4. 각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규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8 / 12

제 11 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1.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제 12 조 (정치활동의 금지)

1.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3 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1.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 발생 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2.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 4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 공영한다.

제 14 조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1.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2.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3.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제 15 조 (공동번영)

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16 조 (금품, 접대 등의 수수금지)

1.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아니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규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9 / 12

2.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 17 조 (기타 불공정 행위의 금지)

1.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2.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4.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서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
5.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우리 케이프의 근간이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일에 대한 정열)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2. 임직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성과 최고의 전문가적 프로의식을 가지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3. 임직원은 각종 법령 및 회사의 방침, 제반 사규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시장 규율에 따른 상식과 선의의 판단에 따라 주어진 직무를 수행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료 및 관련 부서간의 상호 협조와 보완으로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5.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령 및 주요 강령 등을 철저히 숙지, 준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 조 (회사이익 우선의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소조직의 이익보다는 대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2. 임직원은 청렴을 존중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재산을 횡령, 유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규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10 / 12

4.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한 영업, 자기 명의의 영업, 보수를 받고 타 업무에 종사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5. 임직원의 회사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솔선수범하는 자기관리를 통한 올바른 행동)

1. 임직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자기와 회사의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근검 절약과 정직, 성실, 공정, 투명을 생활화한다.
3. 임직원은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4. 임직원은 회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렴을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 신용, 이익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회사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 과도한 주식투자 행위, 음주운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탐구하는 자세로 자기개발)

1. 임직원은 스스로 바람직한 자아상을 정립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회사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2. 본 윤리규정이나 별도 제정하는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정 담당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제보자 보호)

-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 윤리규정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2.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규정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접수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3. 윤리규정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규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11 / 12
윤리규정			

제 6 장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제 23 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한 건전한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재산 운용에 있어서 운용 재산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확보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제 24 조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회사는 법률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기업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제 25 조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의 적기 제공)

-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성실히 제공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회사는 적극적인 홍보, IR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 조 (회계처리의 투명성 유지)

-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한다.
- 회사는 제반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법규에서 정한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재산운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제반 경비를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당한 현금조성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7 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임직원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7 장 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약속

제 28 조 (윤리규정의 준수 책임)

-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12 / 13

2. 조직의 리더는 소송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4. 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정과 윤리규정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별 지 서 식 목 록

(별지서식 1호)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CAPEind 주식회사 케이프	사 규	문서번호	인사,사규-121(01)
		개정일자	2021. 12. 31
	윤 리 규 정	심의번호	심의,사규-080222
		총페이지	13 / 13

(별지서식 1호)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본인은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을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준수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전담부서에 문의 하겠습니다.
3. 윤리규정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내부고발제도 신고 등을 통하여 회사에 알리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CAPEind